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공항운영증명 대상 확대 (안 제47조)

가. 개정이유

- 국제공항 중심으로 공항운영증명 제도를 운용 중이나, 국민안전, 국내 공항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공항에 공항운영증명 필요

나. 개정내용

-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대상 확대, 신공항의 경우에도 공항운영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, 신공항도 개항 전 공항운영등급을 명확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공항안전관리 가능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(안 제49조의2)

가. 개정이유

- 「공항시설법」 제55조의2('26.6 신설)를 통해 기준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대체안전수단 인정 근거 마련,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

나. 개정내용

- 법에서 위임한 대체안전수단 인정 신청·기준·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기준·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 확보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대체안전수단 정기검사 등에 관한 권한 위임 (안 제55조)

가. 개정이유

- 대체안전수단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정기검사 및 시정명령 등 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지방항공청장에 위임 필요
- 공항주변 조류 유인 시설 설치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지방항공청장에 위임 필요

나. 개정내용

- 대체안전수단 정기검사 및 시정명령, 조류 유인 시설 설치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 위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현장 중심의 정기검사·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·징수를 통해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·감독 강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유효성 검사 보완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(안 별표1의2)

가. 개정이유

- 「공항시설법」 제41조('26.6 개정)에 따라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운영 정지, 보완 명령 등 가능
 - 이때, 운영 정지 없이 보완 명령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 제59조에 따라 운영 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필요

나. 개정내용

- 유효성 검사(5년 주기)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불이행 시 공항운영검사(1년 주기)에 따른 시정조치 불이행에 준하여 과징금 부과·징수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유효성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, 공항 운영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 없이 공항안전 확보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